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민갑룡 편집인 김영수 전화 031-620-2473 FAX 031-620-2989

권두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서산시장 이완섭

연구특집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 활동공간: 열린경찰상담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유지웅

경찰관 외상사건경험과 정신건강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박재풍

치안현장탐구

범죄예방기본법, 범죄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정 이명원

외국치안정책

일본의 탐정업계 현황

경찰수사연구원 교수 이형범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공지사항
연구관 동정 및 인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서산시장 이완섭

2013년 개봉된 영화 ‘감시자들’은 범죄대상에 대한 감시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찰 내 특수조직의 활약을 다루고 있다. 이 조직원들은 서울전역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면서 범죄대상을 추적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기에서 범인 추적·검거에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CCTV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CCTV를 활용해 검거한 범죄자 수는 2095명으로, 2013년 1258명에 비해 66.5% 증가하였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 미궁 속 범죄사건의 해결사 역할에는 언제나 CCTV가 중심에 있다. 신속한 범죄 수사는 물론 범행의지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도구로 각광받고 있으며, 실종자를 찾아내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도 CCTV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CCTV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커지고 있다. 바로 사생활침해 문제이다. 기록된 영상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개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동차 번호인식을 통하여 이동경로가 확인 될 정도이니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운영센터와 경찰서 등 정보활용처에서 철저한 교육 및 윤리인식 제고를 통해 정보유출을 차단한다면, 사생활 침해로 인한 사익(私益)보다 공공의 안전강화로 인하여 얻는 공익(公益)이 훨씬 클 것이다.

2015년 파리테러와 2014년 세월호 사고에서 보았듯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는 시민행복도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첨단 ICT를 활용한 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서산시에서는 지역주민 생활안전 강화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선 2016년에 CCTV 통합관리를 전면 시행하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기초로 하는 ‘서산시 U(유비쿼터스)-통합안전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통합안전센터에서는 CCTV 관제뿐 아니라 교통·환경·복지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황관제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CCTV로 차량통행량을 확인하여 도시화에 따른 교통체증이 발생한 구간을 신호기 원격제어를 통해 신속하게 혼잡을 해소할 수 있고,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을 모니터링해서 미세먼지, 황사, 소음 등이 심할 경우 휴대폰을 통해 바로 알려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첨단 ICT와 사물인터넷, 상황관제시스템을 접목하는 융복합행정 실시로 시민들의 민원만족도는 증가하고, 불편사항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첨단 안전시스템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되어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민생치안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경찰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새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더욱 협조하고 노력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루기를 소망해 본다.

PSI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 활동공간: 열린경찰상담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유지웅

들어가는 말

학교경찰관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경우, 지역에 따라 그 형태는 다르지만, 학교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지역이 많고, 학교경찰관의 학교 내 상주형태(즉, 전일 혹은 부분 상주)를 막론하고 학교 내부에 학교경찰관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의 사례 연구에서는 학교 경찰관의 학교 내 상주활동이 대체로 경찰과 학교 주체들(교사,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이듬해인 2013년부터 서울지역 일부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전용 활동공간(열린경찰상담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교경찰관 제도가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와 경찰의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서울지역 학교경찰관의 전용 활동공간인 ‘열린경찰상담실’은 학교와 경찰이 상호 업무 협약을 통해 기초를 마련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방경찰청 합동 T/F팀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것으로서, 학교와 경찰 두 기관의 상호협의를 산물이다. 더구나 ‘열린경찰상담실’은 각 학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개별 학교의 의견도 반영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열린경찰상담실이 설치된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운영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2014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수서경찰서 관할 구역인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세곡동, 수서동, 대치동, 지곡동 그리고 역삼동 일부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해당 지역 초·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을 포함한 교사들이다. 학교 내 열린경찰상담실 운영에 대한 반응은 학교경찰활동의 협력자인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경찰활동 대상인 학생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나, 이 조사는 학교경찰관의 상주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에 주목한 시험적 조사로서 학생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는 해당 지역 초·중·고등학교 총 57개교에 각 5부씩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61부로서 21%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인 학교 교사들의 거의 대부분(91.8%)은 열린경찰상담실 운영이 학교폭력 예방 효과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2. 대다수의 학교 교사들은(88.5%) 학교경찰관의 상주활동이 학교와 경찰의 상호 연계 협력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별히 고등학교 교사들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일반교사들보다 학교폭력을 책임지고 있는 생활지도부장이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3. 대다수의 학교 교사들은(88.5%) 열린경찰상담실 설치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욱 수월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직책별로는 생활지도 부장이 더욱 긍정적이다.

4. 대다수의 학교 교사들은(72.1%) 열린경찰상담실 설치로 경찰과 학생들의 접촉 빈도가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5. 대다수의 학교 교사들은(78.7%) 열린경찰상담실 설치로 경찰과 학생들 접촉의 질적 수준이 좋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6. 다수의 학교 교사들은(55.7%)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 내 활동시간을 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중학교 교사들이 상주시간 확대에 더욱 적극적인 긍정(72.0%)을 나타내고 있고, 성별로는 여교사(45.8%) 보다는 남자 교사(67.7%)들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7. 다수의 학교 교사들은(59.0%)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 내 전용공간(열린경찰상담실)에서 활동할 때, 공권력을 가진 권위자의 느낌을 주는 정복차림을 선호하고 있다.

8. 대다수의 학교 교사들은(86.9%)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 내 전용 활동공간에서 상주하면서 학교 내 순찰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더욱 긍정적이다.

9. 거의 모든 응답자들은(98.1%) 열린경찰상담실 운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는 열린경찰상담실을 통한 학교경찰 활동이 학교폭력예방에 도움을 주고, 경찰과 학교의 상호협력관계에도 도움을 주며, 학생들이 학교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데 유익하고, 학생들과 경찰의 접촉빈도를 늘리고, 접촉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다수의 학교교사들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 내 상주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거의 모든 응답자는 열린경찰상담실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관의 학교 내 상주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 내 상주활동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학교경찰관 제도의 취지가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와 협력하는’ 경찰활동을 벌이는 데 있다고 할 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운영은 학교 내에 학교전담경찰관이 상주하며 활동할 공간을 확보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 내에 상주하며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제도의 운영은 서울지역의 사례와 같이, 지역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PSI](#)

맺음말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 설문조사 결과는 열린경찰상담실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대상 교사들의 대다수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에서는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일선 현장의 이야기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thkwon@police.go.kr
- 내부망/메신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경찰관 외상사건경험과 정신건강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박재풍

들어가는 말

2015년 2월 경기도에서 총기사고로 인하여 경찰관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타깝게도 많은 언론과 정치인, 학자, 시민은 경찰의 총기관리에 대한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사망한 경찰관과 함께 근무한 동료의 겪은 충격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경찰관은 직무특성상 신체의 손상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의 일차적 외상사건과 자동차 충돌, 사망한 사람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이차적 외상사건에 빈번히 노출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관은 직무수행 도중에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시민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

2015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강력범죄 2만 6962건, 교통범죄 57만 3453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경우, 혹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등 경찰관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상황을 매번 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겪는 이러한 외상사건(trauma event)은 그냥 개인이 인내하거나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상사건과 정신건강

외상(Trauma)이란 폭력 또는 공격적 행위에 의해 유발된 신체적인 상처 혹은 충격을

말하며, 심리적 손상 혹은 고통을 유발하는 경험까지도 포함한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에서는 죽음, 심각한 부상, 성폭력 이외에 직업적으로 혐오적인 외상에 반복 노출되는 경험 또는 외상사건으로 추가되어서, 외상사건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경향이다.¹⁾

외상사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수면-각성장애를 들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뒤 이를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떠올리는 재경험, 외상과 연관된 자극에 대한 회피 및 일반적인 인지적·감정적 반응의 둔화, 그리고 과도하게 증가된 각성증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를 의미한다.

우울장애(Depressive Disorders)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수면-각성장애(Sleep-Wake Disorders)는 불면장애, 과다수면장애, 기면증, 호흡관련 수면장애, 일주기리듬 수면-각성장애, 비급속안구운동(NREM)수면 각성장애, 악몽장애, 급속안구운동(REM)수면 행동장애, 하지불안 증후군, 물질/치료약물로 유발된 수면장애 등이며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수면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의 질과 시간대와 양에 대한 불만족감을 호소하여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장애이다.

외상사건과 경찰관 정신건강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찰관은 일반인과 달리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단편적으로 경찰관들과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하여 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6월, 1만 7311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PTSD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82.4%)이 직무수행 중 외상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그 중 37.2%가 트라우마 고위험군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리고 필자가 2015년 9월에 연구한 경찰관 PTSD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관의 외상사건 경험의 경우 죽은 시신을 수습하는 일, 교통사고 현장의 사상자 처리, 직무수행 중 동료가 심한 부상을 당한 사건 순으로 충격척도가 컸으며, 스트레스 점수는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사망함, 심한 부상을 당함, 교통사고 현장 출동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관의 PTSD 위험군은 조사대상의 12.5%가 고위험군에 속하였으며, 저위험군이 7.5%로 약 20%의 경찰관이 PTSD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맺음말

사실 국내에는 경찰관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찰 스스로도 직업적 특성이라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 조직 내에서 정신적 나약함으로 치부해버리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외상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정신적 기능이 파괴되는 직업병의 일종으로, 경찰 본인뿐만 아니

라 국민의 안전과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방과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직무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치료해 줄 필요성이 있다.

현재 경찰청은 전국에 4개의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여 경찰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상담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12만의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위한 센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전문인력도 더욱 더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정신건강센터를 증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 우울증 등은 사회적 지지(동료, 가족 등의 지지)로 그 증상이 완화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외상사건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악화를 조직에서 무시하거나 나태함으로 치부하지 말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독감예방주사처럼 정신건강도 미리미리 예방하고 상담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권태형 연구관
 편집위원 : 이춘삼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 031-620-2574 (경비) 61-2574
 • e-mail : thkwon@police.go.kr

범죄예방기본법, 범죄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경찰청 생활안전과 연구TF 경정 이명원



범 죄는 예방하기 어렵다. 범죄의 발생은 예방의 실패이고 예방의 성공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예방은 책임만 따르고 성과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가 터지기만 하면 경찰의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지지만, 일을 아무리 잘해 봐야 특별히 칭찬받을 일이 없으니 범죄예방 업무는 경찰 내에서도 그리 인기 있는 분야는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범죄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당신은 범죄예방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물으면, 대부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별로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건조한 대답을 하곤 한다. 전통적인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순찰활동은 112 신고출동을 위한 이동이 거의 전부고, 불심검문과 방범진단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장경찰관의 전언이다. 범죄예방업무는 경찰내부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느낌마저 든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이에 부응해 경찰은 물론 여러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안전이 사회적 화두가 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영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은 90년대 후반부터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혁신적인 조치들을 취해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활용한 범죄예방 정책과 민간과 함께하는 협업치안의 성공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영국은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예방정책을 실시하여 10년 만에 전체범죄를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바 있다.

최근 법무부는 이러한 영국의 성공사례를 법무부 주도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년 전부터 CPTED 정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법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몇몇 지역에서 CPTED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국토부와 함께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행사부 협조아래 전국 지방공무원에 대한 CPTED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뿐 아니라 학계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관련예산을 따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갔다.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법」이라는 법안을 만들고 이를 입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미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보호업무의 주무기관이 되었고, 2008년에는 「법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법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주관하게 된 법무부는 이 여세를 몰아서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시행도 법무부의 업무로 편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는 박수를 보내 마땅하겠지만, 범죄예방과 관련한 인력·장비·경험을 갖춘 경찰이 아닌 법무부가 범죄예방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경찰이 이에 따르게 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청은 시작은 다소 늦었지만 법무부보다 더 빠르게 「범죄예방기본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고,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소 사전적 범죄예방과 협업치안의 중요

성을 강조하시던 청장님의 강한 의지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사실, 경찰은 그간 범죄 현장의 최일선에 있으면서도 관련 법안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노출해 온 면이 있다. 재난과 화재의 경우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소방기본법」 등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체계적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근거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예방기본법의 추진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범죄예방 기본법은 가장 먼저 범죄예방이 더 이상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기관 지자체가 예방 책임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음에 반해 정작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책임은 오로지 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속하고 단호한 진압과 검거가 범죄예방의 주요 전략이던 시절에는 이러한 체계가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미연에 변화시켜서 범죄를 예방하는 현대적 범죄예방 전략은 결코 경찰 혼자 전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예방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범죄예방 자문회의의 상설화를 통해 주요 범죄에 대한 협업적·체계적 대응을 활성화하고 상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영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범죄율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범죄예방기본법의 민간자원봉사단체와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민간과의 협업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는 긴 호흡의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경찰은 현안이 되는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압에 역

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휘관들의 임기가 길지 않아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힘든 면이 있었다.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예방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범죄예방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법안은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범죄예방기본법은 효과적인 범죄예방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의 적용을 촉진하고,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범죄예방 디자인을 확산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은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면, 법안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죄예방디자인의 제도화이다. 낙후된 범죄 우려지역을 선정해서 벽화를 그리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 이제까지의 주 사업이었다면, 인증제의 실시와 건축허가 과정에 경찰 참여를 통해 일상적인 건축허가 과정에 범죄예방을 위한 고려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심사이다.

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죄예방공단은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인데, 무엇보다도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의 추진이 공단의 주요 업무가 될 예정이다.

국회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 국회에서 범죄예방기본법이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남은 기간에도 묵묵히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언젠가 되었든 최종적으로 입법이 성공할 때까지 그 노력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SI



일본의 탐정업계 현황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이형범

들어가며

오가와 타카히로 변호사(45세)는 도쿄 토시마구에 있는 아디레(adire)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교통사고 관련사건을 다년간 담당해오고 있다. 어느 날 한 의뢰인이 사무소에 찾아와 교통사고로 양다리가 마비됐다면 손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니 해당 사건을 맡아달라고 하였다. 오가와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 중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곧바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한 탐정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견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최근 민간조사업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와 관심이 뜨겁다. 특히 19대 국회에 들어 송영근 의원이 2013년 3월 10일 대표 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윤재옥 의원이 2015년 11월 13일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2015년 11월 19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두 법안 모두 민간조사업을 새로운 직역(職域)으로 제도화하여 현재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민간의 조사업무에 대한 규제와 양성화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¹⁾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해당 법률안의 국

1) 두 법안의 핵심적 차이는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경찰청장(윤재옥의원의 안) 또는 법무부 장관(송영근의원의 안) 중 누구로 할 것인가이다(법제사업위원회, “민간조사업에 관한 검토보고”, 2013, 5-6쪽).

회통과가 지체되고 있지만 현재의 높은 관심과 분위기를 볼 때 관련법 제정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민간조사업은 실제 어떤 모습일까? 우리보다 먼저 탐정업법(2006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탐정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향후 국내 민간조사업의 모습과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필자는 일본의 탐정업계의 실제 모습을 알고자 필자가 일본유학 시 알게 된 오가와 타카히로 변호사에게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하여 이하의 내용을 전개하기로 한다.

일본 탐정업의 현황

먼저 일본 탐정업 신고현황을 보면 2014년 현재 개인 신고 건수가 4190건, 법인 신고 건수가 1498건 합해서 5688건이다.

<표> 일본 탐정업 신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5,546	5,670	5,688
개인	4,090	4,206	4,190
법인	1,456	1,464	1,498

출처: 일본경찰청(2015)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탐정업 신고는 매년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데 개인 신고 건수는 다소 기복이 있는 반면 법인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탐정업은 신고제라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든지 경

찰에 신고한 후 탐정업을 영위할 수 있다(탐정업법 제3조·제4조). 이는 탐정업무의 신뢰성 측면을 이유로 고객이 개인 사업자보다는 규모가 비교적 큰 법인 사업자를 선호하게 되어 탐정사무소가 점점 기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도쿄에 있는 GARU AGENCY라는 탐정사무소이다. 조사원이 714명이고 자체 조사학교까지 보유하고 있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일본 법인탐정사무소

회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GARU AGENCY 주식회사 ■ 설립: 1980년 1월 28일 ■ 자본금: 3억 2,500만엔 ■ 주소: 도쿄 시부야구 진구마에 2丁目 1號 ■ 사업내용 조사업·조사학교 ■ 탐정신고번호: 도쿄도 공안위원회 제30110358호 ■ 주요거래처 전국상장기업 및 금융회사, 변호사사무소 	 <p>전국 124개 네트워크</p>  <p>조사원 714명</p>

출처: <http://www.galu-agency.org/aboutus.html>

그렇다면 실제 탐정은 주로 어떤 일을 하며 사건 수입료는 어느 정도일까? 오가와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사건, 실종자 소재탐지, 근무처·거래은행조사(차압용), 보험사기적발, 결혼 상대방의 가문·행실조사 등 탐정업무가 매우 다양하다고 한다. 탐정의 조사비용은 1일 기준 5~10만 엔 정도, 사건 1건당 20만 엔에서 100만 엔 정도 든다고 한다. 또한 탐정 경력이 짧은 사람은 월 20만 엔 정도, 경찰출신이나 격투기 경험자 등 노하우가 인정되면 연 400만 엔에서 600만 엔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엔 정도까지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일본의 경우 생각보다 탐정

업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신고제이고 별다른 자격 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성공보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50만 엔 이상을 지불할 수 있는 시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도 탐정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탐정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이혼소송인데 상대방의 유책행위, 예를 들어 ‘바람을 피웠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사안에서 만약 상대방에게 100% 책임이 있을 경우 통상 위자료로 300만 엔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사가 최대 50만 엔, 탐정이 50만 엔을 받게 된다고 한다. 끝으로 탐정사무소와 변호사사무소와의 협업관계를 살펴보면, 통상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탐정사무소를 1~2군데 알고 있고 사실상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며. 다만 계약은 의뢰인과 변호사, 의뢰인과 탐정사무소로 하고 변호사가 본인의 업무를 위하여 직접 탐정사무소와 계약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한편 탐정사무소가 고객을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소개비를 받는 경우 변호사법 제72조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변호사는 변호사회로부터 징계를 받기 때문에 명시적인 금전거래는 없다고 한다.

마치며

일본의 탐정업은 기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별한 자격이 없이도 탐정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다. 민간조사업의 입법 단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를 참고하여 자격 취득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SI](#)

연구소 소식

◆ **아시아 법과학 네트워크 심포지엄 참석**

치안정책연구소장과 연구관 등 6명은 11월 14~1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법과학 네트워크(A.F.S.N)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 **2015년 치안정책연구소 하반기 워크숍**

연구소는 11월 25~26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펜션타운에서 하반기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연구소는 연구윤리 특강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연구 발전방안 및 중점추진업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치안정책연구(제29권 제3호) 발간**

연구소는 12월 31일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3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치안정책연구」에는 모두 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연번	제 목	저자
1	경찰 교통안전활동의 시민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창호
2	어린이집 원장의 안전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통학버스를 중심으로-	전병주 최은영
3	수사 이익신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단계에서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명도현 박호현
4	한국 산업스파이 범죄의 처벌규정 및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박락인
5	스토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 방안	김잔디
6	문화갈등과 경찰신뢰에 관한 연구 -국내거주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조상현 최재용 김순석
7	경찰의 거리노숙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경찰청 WEB GOVERNANCE 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은수 이상원
8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대응 현황과 법적 허용 수단	나달숙
9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문제	서주연

연구관 동정

◆ **박재풍 연구관(법정책기획연구실)**은 12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특정직 공무원의 현업수행 과정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 보호방안”에서 경찰관의 감정노동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토론 하였다.

◆ **이기수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12월 11일 대만중앙경찰대학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한국, 대만, 일본 참가)에서 ‘한국과학수사법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연구소 인사

◆ **제9대 치안정책연구소장 민갑룡 경무관 취임**

12월 29일 치안정책연구소장으로 민갑룡 경무관이 취임하였다. 신임 민갑룡 소장은 전남 무안시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서울 송파시장, 광주청 제1부장, 인천청 제1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 **제8대 치안정책연구소장 양성진 경무관이**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이임하였다.

◆ **11월 11일 강소영 연구관이** 퇴직하였고, 12월 21일 **한영록 총경이**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으로 부임하였다.



연구소 전경